

참 고 자 료(2. 일본 전기사업법 개정내용 및 배경)

일본 전기사업법은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31년만에 개정(1995년 4월)되었다. 전기사업법의 주된 개정내용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으나 큰 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1. 도매 공급

일본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은 종래는 「잉여전력 구입제도」와 「도매 전기사업자로부터의 공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병합발전으로부터의 잉여전력의 구입」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시에는 거의 없고 또한 「도매 전기사업자로부터의 공급」에 관해서도 일반 전기사업자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참가하는 용이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잉여전력 구입제도의 적정화와 병행하여 입찰제도의 도입에 의한 발전사업으로의 신규사업자의 참여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도매공급제도가 만들어졌다.

2. 직접 공급(소매)

일반 전기사업자이외에 의한 전력의 직접공급은 종래는 “특정공급제도”로서 비상시에 한정된 범위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특정공급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한편 새로운 특정의 수요에 응하여 재개발지역 등에서의 전기의 공급을 행하는 특정전기사업이 창설되었다. 특히, 경영자가 같으면 직접팔 수 있도록 되었다.

- ※ 「특정공급」에 있어서 자가발전 자가소비로 간주되어 장관의 허가없이 공급가능에
- 동일지방 공공단체 내부에 있어서 타부문으로의 공급
 - 사택에 대한 공장으로부터 공급
 - 동일건물(업무용빌딩, 집합주택등) 내에서의 공급

3. 전기사업법 개정 요지

	개 정 내 용	배경과 과제
발전부문 신규참여의 확대	① 도매전기사업(일반전기사업자에게 그 일반전기사업을 위한 전기를 공급하는 업) 허가원칙 철폐 -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를 제외,도매전기사업에 관한 참여허가 철폐 ② 입찰제도의 도입 - 일반전기사업자의 전원조달에 관하여 입찰제도의 도입 - 입찰을 통한 매전(賣電)에 대하여는 요금허가 불필요 ③ 도매 탁송의 활성화 - 지정 전기사업자(전력9사)에 대하여 도매탁송에 관한 약관을 책정, 신고, 공표의 의무 부여 - 부당하게 탁송을 거부하는 경우에 도매탁송의 인수에 관한 명령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수요지에 접근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중·소규모의 전원에 의한 발전사업에 참여의 가능성이 확대 ○ 이들 새로운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참여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분야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더우기 도매탁송, 발전사업자에 타 지역 전력회사로의 전력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력회사의 송전선 활용의 활성화에 의한 광역 발전시장의 형성이 필요

	개 정 내 용	배경과 과제
<p>특정전기사업에 관한 제도의 창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된 공급지점에 있어서 수요에 부응하는 전기의 공급으로 특정 전기사업을 정의 ○ 특정전기사업은 공급지점마다 허가제로 하고 공급지점에 대하여 수요에 책임을 지고 응할 수 있는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심사 ○ 특정전기사업에 있어 요금은 신고제, 수요자간의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는 공급조건의 변경명령을 규정 ○ 특정전기사업자의 공급지점에 있어서의 공급의무를 규정 ○ 보완공급계약(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정전기사업자로의 비상용 Back-up 계약)을 허가제로 하고 양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동계약에 대한 체결에 관한 명령을 규정 ○ 일반전기사업자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의 사업개시 지점의 수요에 응하는 공급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병합발전등 중소규모의 전원을 수요지에 근접하여 있는 특정의 공급지점에 있어서 수요에 응하여 전력판매(소매) 사업을 영위할 능력있는 사업자의 참여가능성 확대 ○ 이들 공급사업을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실패, 위치부여에 응한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필요
<p>요금규제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전력의 활용등에 의한 부하평준화등에 이바지하는 요금에 관하여 개별인가(연간 약1만건)제에서 수요가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각종 약관의 신고제 이행 ○ 당해 약관의 공표를 의무화 ○ 당해 약관이 허가요금에 의한 수요가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변경 명령을 규정 ○ 사업자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총괄원가 범위를 유지하며 각 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지표를 비교하여 효율화 정도에 부응하여 사정의 격차를 두는 방식을 요금제도에 도입 	<p>하계피크의 첨예화등과 이에 수반하는 부하율의 악화에 의한 전력회사의 자본비의 상승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요가의 부하평준화에 이바지 하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p>
<p>자기규제의 개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원자력등 필요 최소한의 것에 한정: 중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단계에 걸친 사용전 검사의 간소화 - 용접검사에 있어서 검사방법의 합리화 - 정기검사에 있어서 자주검사제도의 도입 ② 자기책임을 명확히 한 보안규제체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직접간여를 중시한 보안체계로부터 자기책임을 명확히한 보안체계로 전환 - 입찰에 의한 도매공급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의 참여를 병행하여 태양전지등의 취급간소화에 수반하여 조문구성,재정리 ③ 전기 주임기술자 국가시험업무의 민간 시험기관으로 위임 	<p>기술의 진보에 따라 보안실적의 향상, 자기책임의 명확화 요청등을 거쳐 보안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직접적 간여의 최소화,중점화,열린규제체계의 확보, 기동적 보안의 확보 및 신에너지등 도입의 기반정비를 목표로 하여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p>
<p>기 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로지 하나의 건물내에 한정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는 개별허가를 폐지하고 자유로 한다 ② 전기 공작물의 변경에 관해서는 개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③ 부하평준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수요구조 형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하는경우 등에 관하여 일반전기사업자의 검업규제를 간소화한다. 	

- 주) 1. 이 법률에서 도매전기사업이란 일반전기사업자에 그 일반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기위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전기공작물이 통상산업성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
2. 이 법률에서 특정전기사업자라 함은 특정의 공급지점에 있어 수요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실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5호 관련)
3. 이 법률에서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 도매전기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 관련)
4. 이 법률에서 도매공급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일반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의 공급(대체공급 제외)으로 통상산업성령에서 정한것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도매공급사업자라 함은 도매공급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일반전기사업자 및 도매전기사업자 제외)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0호 관련)
6. 이 법률에서 대체공급이라 함은 다른 자로부터 수전한 자가 동시에 그 수전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다른자에게 수전 전기량에 상당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열병합발전 도입현황〉

1997년 9월말 현재

연도	민 생 용			산 업 용			합 계			누 계		
	건수	대수	발전용량 (KW)	건수	대수	발전용량 (KW)	건수	대수	발전용량 (KW)	건수	대수	발전용량 (KW)
'80	3	9	12,796.0	6	18	111,550.0	9	27	124,346.0	9	27	124,346.0
'81	4	7	1,768.0	3	3	760.0	7	10	2,528.0	16	37	126,874.0
'82	3	4	1,089.0	4	4	2,825.0	7	8	3,914.0	23	45	130,788.0
'83	16	26	6,561.0	9	12	6,661.0	25	38	13,222.0	48	83	144,010.0
'84	9	12	2,003.0	10	13	61,783.5	19	25	63,786.5	67	108	207,796.5
'85	33	52	13,182.0	4	5	2,324.0	37	57	15,506.0	104	165	223,302.5
'86	44	60	12,909.0	22	34	88,522.0	66	94	101,431.0	170	259	324,733.5
'87	76	133	34,046.0	75	115	313,422.0	151	248	347,468.0	321	507	672,201.5
'88	109	174	45,184.5	122	180	371,631.0	231	354	416,815.5	552	861	1,089,017.0
'89	167	282	73,086.0	141	236	381,762.0	308	518	454,848.0	860	1,379	1,543,865.0
'90	170	284	79,520.6	135	207	362,992.0	305	491	442,512.6	1,165	1,870	1,986,377.6
'91	140	235	75,359.1	89	168	257,636.0	229	403	332,995.1	1,394	2,273	2,319,372.7
'92	104	175	57,860.0	61	117	170,499.0	165	292	228,359.0	1,559	2,565	2,547,731.7
'93	101	176	62,677.5	62	91	256,640.0	163	267	319,317.5	1,722	2,832	2,867,049.2
'94	112	178	57,322.0	59	105	205,943.0	171	283	263,265.0	1,893	3,115	3,130,314.2
'95	109	165	48,295.5	90	157	269,954.0	199	322	318,249.5	2,092	3,437	3,448,563.7
'96	147	238	80,058.0	87	153	385,474.0	234	391	465,532.0	2,326	3,828	3,914,095.7
'97.9	57	90	39,431.4	33	59	111,132.0	90	149	150,563.4	2,416	3,977	4,064,659.1
계	1,404	2,300	703,148.6	1,012	1,677	3,361,510.5	2,416	3,977	4,064,659.1			

※ 본 통계는 GT, GE, DE에 의한 열병합발전현황이며 ST는 제외되어 있음.